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집중관리구역 지원을 위한 조례 위임 근거 신설 〉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9095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집중관리구역 지원을 위한 조례 위임 근거 신설	2
※ 참고자료	8
1. 정비 대상 법령 목록	8

I. 제안경위

2025년 3월 19일 정부가 제출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대하여 해당 시·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집중관리구역 지원을 위한 조례 위임 근거 신설

개정안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대한 우선 지원을 해당 시·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의 법적 정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①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2개 이상의 <u>시·도에</u>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① ----- ----- ----- ----- ----- ----- ----. ----- ---- <u>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u> 에 ----- ----- ----- -----.

현행	개정안
라야 한다. 1. ~ 4. (생략) ② ~ ④ (생략) 제22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 <u>시장·군수·구청장</u>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하 “집중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집중관리구역에서 <u>환경부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 6. (생략) ③ 집중관리구역의 지정·해제 요건, <u>절차</u>, <u>지원방법</u>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 <u>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u>----- ----- ----- ----- -----. ② ----- -----<u>해당</u> <u>시·도,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u> ----- -----. 1. ~ 6. (현행과 같음) ③ ----- --- <u>절차</u>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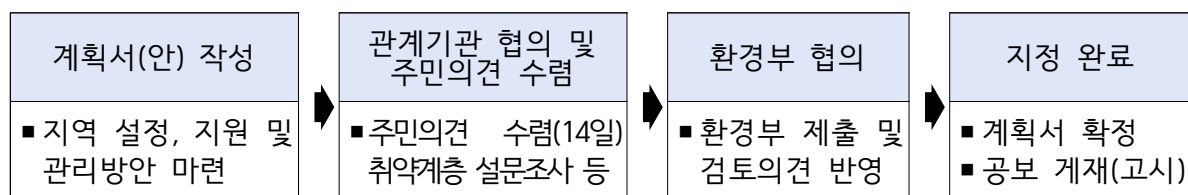
첫째, 현행법 제22조¹⁾에서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미세먼지

1) 법 제22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하 “집중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집중관리구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²⁾하고,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 살수차·진공청소차의 집중 운영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³⁾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절차]



자료: 환경부

그런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집중관리구역의 특성에 맞는 우선지원 정책의 실시 근거가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⁴⁾

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따른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
 2. 살수차·진공청소차의 집중 운영
 3. 어린이 등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4. 학교 등에 공기 정화시설 설치
 5. 수목 식재 및 공원 조성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집중관리구역의 지정·해제 요건, 절차,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2) 2024년 말 기준 전국 58개소 지정

[참고자료 1]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운영 현황

3) 2025.4. 현재 조문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4) 법제처 보도자료, “지방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자치입법권 강화로 실현합니다.”, 2025.3.18.

- 법제처는 2024년 3월부터 지방시대위원회와 협업하여 지방재정이 소요되는 자치사무와 관련된 법령을 전수 조사했다. 이후 행정안전부 및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함께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법령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조례 등으로 위임이 필요한 정비과제를 발굴하여 총 62개 법령(22개 법률, 40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개정안은 정부의 법령정비 계획에 따라 살수차·진공청소차의 집중 운영 등 집중관리구역에 대한 우선 지원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사항을 환경부령이 아닌 시·도와 시·군·구(자치구를 포함한다)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특성에 맞춘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사업 예시]

에어커튼	IoT 미세먼지 측정기기	미세먼지 신호등
		

자료: 환경부

둘째, 「지방자치법」 제2조5)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 ② 시, 군, 구(자치구를 포함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현행법 제7조6)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5)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②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제12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법 제7조(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③ 정부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10조에 따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종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

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시·도지사”로 약칭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18조7)에서는 2개 이상의 시·도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해당 시·도지사에게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시·도”를 뜻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개정안은 “시·도”의 범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 명확히 정비하려는 것으로,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보임.

참고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⁸⁾에서도 “시·도”와 “시·도지사” 개념을 명확히 약칭하고 있음.

7) 법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①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2개 이상의 시·도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 제한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3.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
4. 그 밖에 비상저감조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기관리권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대기관리권역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질소산화물
2. 황산화물
3. ~ 7. (생략)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략)
6.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이하 “지역배출허용총량”이라 한다)

문 의 처
02)6788-5536

※ 참고자료

1. 정비대상 법률 목록9)

	법령	내용	소관부처
22개 법률 개정안			
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5조제1항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경지역에서의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 육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행정안전부
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7조제1항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서의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의 육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행정안전부
3	체육인 복지법 제10조제2항 등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장학사업 및 원로 체육인 지원에 관한 지원 대상자 선정, 지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문화체육관광부
4	동물보호법 제35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동물보호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농림축산식품부
5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밀원식물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업 등 밀원식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농림축산식품부
6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보건복지부
7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지방자치단체가 노숙인 등의 적절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실시하는 주거지원의 종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부
8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5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간병이 필요한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저소득층 농어업인 가구에 대해 간병비용 등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부

9) 법제처 보도자료, “지방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자치입법권 강화로 실현합니다.”, 2025.3.18.

9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제공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종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보건 복지부
1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자살예방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	보건 복지부
1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할 수 있는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을 추가함	환경부
1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할 수 있는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을 추가함	환경부
13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2항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녹색구매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환경부
14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2항 등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서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환경부
15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할 수 있는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을 추가함	환경부
16	지하수법 제30조의2제2항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을 추가함	환경부
17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할 수 있는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을 추가함	환경부
1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등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지원시설 등이 수행하는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지원시설에 대한 보호비용의 범위 및 지원방법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여성 가족부

1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등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호비용의 범위 및 지원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여성가족부
20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4제1항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의 종류를 정할 수 있도록 함	여성가족부
21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57조제2항 등	시장·군수등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을 추가하고, 시장·군수등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국토교통부
22	소금산업 진흥법 제14조제4항 등	지방자치단체가 염전 제조시설 등의 현대화 등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대상·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소금산업 활성화를 위해 홍보관등에 대해 지원하는 경우 지원대상·기준·절차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해양수산부